



논산을 새롭게
시민을 행복하게

의안번호

제226호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논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3. 11. 15.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26호
----------	-------

제출연월일 : 2023. 11. 15.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총괄과장

1. 제안이유

재난 상황 발생 시 비상발령단계 명확화로 신속한 재난대응과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재난유형·상황별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편성기준 명확화
- 나. 자연재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및 편성기준(안 별표 4)
- 다. 사회재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및 편성기준(안 별표 5)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기획감사실-10902호(2023.10.12.)]
- 2)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복지정책과-29906호(2023. 10. 4.)]
- 3)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예산실-11413호(2023. 9. 26.)]
- 4)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3. 9. 22. ~ 2023. 10. 13.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5)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6) 충청남도 소관실과 : 충청남도 자연재난과(☎041-635-3255)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6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안 전 총 괄 과	조 용 근
	재 난 관 리 팀 장	양 선 응
자	담 당 자	김 영 덕 (746-6345)

[별표 4]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가동 및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1호 관련)

1. 준비단계

가. 가동기준

- 평상시, 초기(사전·후)대응의 경우

나. 편성기준

담당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실무반	인원	3+a명	
	반장	안전총괄과 팀장급	
	1) 상황총괄반 (2명)	가) 재난정보 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 안전총괄과 2 + a명
	2) 협업기능반 (a)	가)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농촌활력과, 건설과, 산림공원과, 지역개발과, 도로과 등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의함)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 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비상 1단계

가. 가동기준

1) 풍수해(호우·대설·태풍)

-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대설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 기상특보 중 태풍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2) 지진 및 화산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자연지진·지진해일 및 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 중 규모 4.0 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 또는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나. 편성기준

통제관	주관부서 국장		
담당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실무반	인원	총 3+a명	
	반장	안전총괄과 팀장급	
	1) 상황관리 총괄반 (2+a명)	가) 재난정보 수집· 분석 및 진파, 재난상황관리	· 안전총괄과 2 + a명
	2) 협업기능반 (a)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안전총괄과 · 복지정책과 · 100세행복과 등
		나) 긴급통신지원반	· 디지털정보과
	다)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농촌활력과, 축수산과, 건설과, 산림공원과, 지역개발과,	

		도시주택과, 도로과, 상하수도과 등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의함)
라)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지역경제과
마)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총괄과
바) 교통대책반		• 교통과
사)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아) 재난현장 환경 정비반		• 환경과 • 자원순환과
자)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주민생활지원과
차) 재난수습 홍보반		• 홍보협력실
카) 사회질서 유지반		• 논산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 반		• 논산소방서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읍, 면, 동별로 직원 1명 이상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3. 비상 2단계

가. 가동기준

1) 풍수해(호우·대설·태풍)

- 기상특보 중 호우·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 호우·대설·태풍 등으로 국지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측될 경우

2) 지진 및 화산

-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지진특보 중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나. 편성기준

통제관	주관부서 국장			
담당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실무반	인원	총 7+a+β명		
	반장	안전총괄과 팀장급		
	1) 상황관리 총괄반 (6+a명)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2명)	· 안전총괄과 2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1명)	· 안전총괄과 1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2명)	· 안전총괄과 1명 · 기획감사실 1명	
라) 행정지원팀(1명)		· 자치행정과 1명		

2) 협업기능반 (a)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총괄과 • 인구청년교육과 • 복지정책과 • 100세행복과 등
	나) 긴급 통신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정보과
	다)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유치과, 농촌활력과, 축수산과, 건설과, 산림공원과, 지역개발과, 도시주택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상하수도과 등 <p>(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의함)</p>
	라)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제과
	마)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총괄과
	바) 교통대책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과
	사)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아) 재난현장 환경 정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과 • 자원순환과
	자)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생활지원과
	차) 재난수습 홍보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협력실
	카) 사회질서 유지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산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 반	· 논산소방서
	재난관리책임기관 등(β)	· 육군3585부대 4대대, 논산경찰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논산국토관리 사무소, 한국전력공사논산지사, KT논산지점, 한국농어촌공사논산지 사, 한국도로공사논산지사, 한국수자 원공사논산수도센터, 한국전기안전 공사충남남부지사 및 그 밖의 재난 관리 책임기관 파견직원 중 필요 기 능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
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5. 부서별 직원의 3분의 1 이상, 읍·면·동장 또는 팀장을 포함한 직원 3분의 1 이상이 근무하
도록 할 수 있다.

4. 비상 3단계

가. 가동기준

1) 풍수해(호우·대설·태풍)

- 기상특보 중 호우·대설경보가 지속되는 경우
- 기상특보 중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 호우·대설·태풍 등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측될 경우

2) 지진 및 화산

-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통보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측될 경우
-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지진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나. 편성기준

통제관	주관부서 국장			
담당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실무반	인원	총 10+α+β명		
	반장	안전총괄과 팀장급		
	1) 상황관리 총괄반 (9+α명)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2명)	· 안전총괄과 2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2명)	· 안전총괄과 2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3명)	· 안전총괄과 1명 · 기획감사실 2명	
라) 행정지원팀(2명)		· 자치행정과 2명		

2) 협업기능반 (a)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총괄과 • 인구청년교육과 • 복지정책과 • 100세행복과 등
	나) 긴급 통신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정보과
	다)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유치과, 국방산업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농촌활력과, 축수산과, 건설과, 산림공원과, 지역개발과, 도시주택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상하수도과, 농업기술센터 등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의함)
	라)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제과
	마)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총괄과
	바) 교통대책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과
	사)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아) 재난현장 환경 정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과 • 자원순환과
	자)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생활지원과
	차) 재난수습 홍보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협력실

	카) 사회질서 유지반	· 논산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논산소방서
	재난관리책임기관 등(β)	· 육군3585부대 4대대, 논산경찰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한국전력공사논산지사, KT논산지점, 한국농어촌공사논산지사, 한국도로공사논산지사, 한국수자원공사논산수도센터, 한국전기안전공사충남남부지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 책임기관 파견직원 중 필요 기능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5. 부서별 직원의 2분의 1 이상, 읍·면·동장 또는 팀장을 포함한 직원 2분의 1 이상이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별표 5]

사회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가동 및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2호 관련)

1. 가동기준

-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르는 경우
-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대책본부 또는 시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편성기준

본 부 장	시 장		
차 장	부 시 장		
통 제 관	재난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 또는 직속기관장		
담 당 관	재난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실무반	인 원	총 8+a+β+y명	
	반 장	안전총괄과 팀장급	
	1) 재난관리 총괄반 (7명)	가) 상황관리총괄팀 (3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2명 · 사회재난 총괄부서 1명
		나) 수습상황과약팀 (4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2명 · 사회재난 총괄부서 1명
	2) 협업기능반 (a)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행정지원부서 1명 · 안전총괄과 · 인구청년교육과 · 복지정책과

	· 100세 행복과 등
나) 긴급 통신지원반	· 디지털정보과
다)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투자유치과, 농촌활력과, 축수산과, 건설과, 산림공원과, 지역개발과, 도시주택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상하수도과 등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의함)
라)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지역경제과
마)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총괄과
바) 교통대책반	· 교통과
사)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아) 재난현장 환경 정비반	· 환경과 · 자원순환과
자)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주민생활지원과
차) 재난수습 홍보반	· 홍보협력실
카) 사회질서 유지반	· 논산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 반	· 논산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등(β)	· 육군3585부대 4대대, 논산경찰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논산국토관리

	사무소, 한국전력공사논산지사, KT논산지점, 한국농어촌공사논산지사, 한국도로공사논산지사, 한국수자원공사논산수도센터, 한국전기안전공사충남남부지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 책임기관 파견직원 중 필요기능
현장지원반(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재난관리 실·국·소 소속직원 • 해당 읍·면·동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재난대응협업반·현장지원반 구성 :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4] 자연재난 발생 시의 시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1호 관련)</p> <p><신설></p>	<p>[별표 4]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가동 및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1호 관련)</p> <p>1. 준비단계</p> <p>가. 가동기준 - 평상시, 초기(사전.후)대응의 경우</p> <p>나. 편성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담 당 관</th> <th colspan="3" style="width: 90%;">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인 원</td>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3+α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반 장</td>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안전총괄과 팀장급</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 상황총괄반 (2명)</td> <td style="width: 20%;">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td> <td colspan="2" style="width: 80%;">· 안전총괄과 2 + α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실무반 2) 협업기능반 (α)</td> <td>가) 시설피해 응급복구반</td> <td colspan="2">· 농촌활력과, 건설과, 산림공원과, 지역개발과, 도로과 등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의함)</td> </tr> </tbody> </table> <p>비고(근무방법)</p> <p>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p> <p>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p>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인 원	3+α명			반 장	안전총괄과 팀장급			1) 상황총괄반 (2명)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 안전총괄과 2 + α명		실무반 2) 협업기능반 (α)	가)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농촌활력과, 건설과, 산림공원과, 지역개발과, 도로과 등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의함)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인 원	3+α명																				
반 장	안전총괄과 팀장급																				
1) 상황총괄반 (2명)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 안전총괄과 2 + α명																			
실무반 2) 협업기능반 (α)	가)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농촌활력과, 건설과, 산림공원과, 지역개발과, 도로과 등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의함)																			

1. 호우·대설·태풍 시 편성기준

가. 비상1단계

본부장	시장		
차장	부시장		
통제관	주관부서 실국 소장		
담당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실무반	인원	총 6+α명	
	반장	재난안전상황실 담당 팀장	
	1) 상황관리 총괄반 (5명)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5명) · 재난상황관리반 5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2) 협업기능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주민생활지원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자치행정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건설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지역경제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홍보협력실
		사) 재난관리자 원 지원반	· 안전총괄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주민생활지원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논산경찰서
타) 수색·구조 구급반		· 논산소방서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시 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비상 1단계

가. 가동기준

1) 풍수해(호우·대설·태풍)

- 「기상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대설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 기상특보 중 태풍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2) 지진 및 화산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을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자연지진·지진해일 및 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 중 규모 4.0 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 또는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나. 편성기준

통제관	주관부서 국장		
담당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실무반	인원	총 3+α명	
	반장	안전총괄과 팀장급	
	1) 상황관리 총괄반 (2+α명)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 안전총괄과 2 + α명	
	2) 협업기능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안전총괄과 · 복지정책과 · 100세행복과 등
		나) 긴급 통신지원반	· 디지털정보과
		다)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농촌활력과, 축수산과, 건설과, 산림공원과, 지역개발과, 도시주택과, 도로과, 상하수도과 등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의함)
		라)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지역경제과
		마) 재난관리지원 지원반	· 안전총괄과
		바) 교통대책반	· 교통과
		사)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아) 재난현장 환경 정비반	· 환경과 · 자원순환과
		자)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주민생활지원과
		차) 사회질서 유지반	· 논산경찰서
		카) 수색·구조·구급반	· 논산소방서
타) 재난수습 홍보반		· 홍보협력실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읍, 면, 동별로 직원 1명 이상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나. 비상2단계

본부장	시장		
차장	부시장		
통계관	주관부서 실·국 소장		
담당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실무반	인원	총 13+α+β명	
	반장	과장급 1명	
	1) 상황관리 총괄반 (12명)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5명)	·재난상황관리반 5명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3명)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주관부서 직원 2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3명)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주관부서 직원 2명
		라) 행정지원팀(1명)	·자치행정과 직원 1명
	2) 협업기능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주민생활지원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환경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자치행정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건설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지역경제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홍보협력실
		사) 재난관리지원 지원반	·안전총괄과
		아) 교통대책반	·교통과
		자) 의료 방역서비스 지원반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주민생활지원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논산경찰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가) 수색·구조·구급반	·논산소방서	
	나)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2명)	·안전총괄과 2명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시·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비상 2단계

가. 가동기준

- 1) 풍수해(호우, 대설, 태풍)
 - 기상특보 중 호우,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 호우, 대설, 태풍 등으로 국지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측될 경우
- 2) 지진 및 화산
 -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지진특보 중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나. 편성기준

통제관	주관부서 국장		
담당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실무반	인원	총 7+α+β명	
	반장	안전총괄과 팀장급	
	1) 상황관리 총괄반 (6+α명)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2명)	·안전총괄과 2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1명)	·안전총괄과 1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2명)	·안전총괄과 1명 ·기획감사실 1명
		라) 행정지원팀(1명)	·자치행정과 1명
	2) 협업기능반 (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안전총괄과 ·인구청년교육과 ·복지정책과 ·100세행복과 등
		나) 긴급 통신지원반	·디지털정보과
		다)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투자유치과, 농촌활력과, 축수산과, 건설과, 산림공원과, 지역개발과, 도시주택과, 도시재정과, 도로과, 상하수도과 등 (재난분야 위기관의 매뉴얼에 의함)
		라)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지역경제과
		마) 재난관리지원 지원반	·안전총괄과
		바) 교통대책반	·교통과
		사)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보건소
		아)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환경과 ·자원순환과
		자)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주민생활지원과
차) 사회질서 유지반		·논산경찰서	
카) 수색, 구조·구급반		·논산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등(β)	가) 수색, 구조·구급반	·논산소방서	
	타) 재난수습 홍보반	·홍보협력실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5. 부서별 직원의 3분의 1 이상, 읍·면·동장 또는 팀장을 포함한 직원 3분의 1 이상이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다. 비상3단계

본부장		시장	
차장		부시장	
통제관		주관부서 실·국·소장	
담당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실무반	인원	총 18+α+β명	
	반장	과장급 1명	
	1) 상황관리총괄반 (17+α명)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6명)	·재난상황관리반 6명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2명 ·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3명)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주관부서 직원 2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7명)	·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주관부서 직원 5명
	라) 행정지원팀(1명)	·자치행정과 직원 1명	
	2) 협업기능반(α)	가) 긴급생활 안전지원반	·주민생활지원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환경과
		다) 긴급통신지원반	·자치행정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건설과
마) 에너지 공급피해시설 복구반		·지역경제과	
바) 재난수습 홍보		·홍보협력실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안전총괄과	
아) 교통대책반		·교통과	
자) 의료 방역서비스 지원반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주민생활지원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논산경찰서		
타) 수색·구조 구급반	·논산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논산경찰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육군 제3585부대4대대, 한국전력공사는산지사, KT논산지점, 한국전기안전공사충남 남부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충남지회본부, 한국농어촌공사논산지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등 필요 가능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 주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 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 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시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비상 3단계

가. 가동기준

- 1) 풍수해(호우,대설,태풍)
 - 기상특보 중 호우·대설경보가 지속되는 경우
 - 기상특보 중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 호우·대설·태풍 등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측될 경우
- 2) 지진 및 화산
 -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통보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측될 경우
 -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지진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나. 편성기준

통제관		주관부서 국장		
담당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실무반	인원	총 10+α+β명		
	반장	안전총괄과 팀장급		
	1) 상황관리총괄반(9+α명)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2명)	·안전총괄과 2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2명)	·안전총괄과 2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3명)	·안전총괄과 1명 ·기획감사실 2명	
	라) 행정지원팀(2명)	·자치행정과 2명		
	2) 협업기능반(α)	가) 긴급생활 안전지원반	·안전총괄과 ·인구정책교육과 ·복지정책과 ·100세행복과 등	
		나) 긴급통신지원반	·디지털정보과	
		다)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투자유치과, 국방산업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농촌활력과, 축수산과, 건설과, 산림공원과 지역개발과, 도시주택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상하수도과, 농업기술센터 등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의함)	
		라) 에너지 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지역경제과	
마)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안전총괄과		
바) 교통대책반		·교통과		
사) 의료 방역서비스 지원반		·보건소		
아)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환경과 ·자원순환과		
자)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주민생활지원과		
차) 사회질서 유지반		·논산경찰서		
카) 수색, 구조·구급반	·논산소방서			
타) 재난수습 홍보반	·홍보협력실			
재난관리책임기관 등(β)		·육군3585부대 4대대, 논산경찰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논산국토관리 사무소, 한국전력공사는산지사, KT논산지점, 한국농어촌공사는산지사, 한국수자원공사논산수도센터, 한국전기안전공사충남남부지사 및 그 밖의 재난 관리 책임기관 파견직원 등 필요 가능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 주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 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5. 부서별 직원의 2분의 1 이상, 읍·면·동장 또는 팀장을 포함한 직원 2분의 1 이상이 근무 하도록 할 수 있다.

<삭제>

2. 지진(해일)·화산·폭염·한파 시 편성기준

가. 비상1단계

본부장	시장		
차장	부시장		
통제관	주관부서 실·국소장		
담당관	해당 재난업무에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실무반	인원	총 60명	
	반장	재난안전상황실 담당 팀장	
	1) 상황관리 총괄반 (5명)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5명) · 재난상황관리반 5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가) 긴급생활 안전지원반	가) 긴급생활 안전지원반	· 주민생활지원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자치행정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건설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반	· 지역경제과
	2) 협업기능반 (α)	바) 재난수습 홍보반	· 홍보협력실
		사) 재난관리지원 지원반	· 안전총괄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과
		자) 의료 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주민생활지원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순안경찰서	
태) 수색·구조 구급반		· 논산소방서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시 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삭제>

나. 비상2단계

본부장	시장		
차장	부시장		
통계관	주관부서 실국소장		
담당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실무반	인원	총 13+α+β명	
	반장	과장급 1명	
	1) 상황관리 총괄반 (12명)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5명)	· 재난상황관리반 직원 5명 · 재난안전상황실 1명, 재난총괄부서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2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3명)	· 재난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3명)	· 재난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라) 행정지원팀(1명)	· 자치행정과 직원 1명
	2) 협업기능반(α)	가) 긴급생활안전지원반	· 주민생활지원과
		나) 재난현장환경정비반	· 환경과
		다) 긴급통신지원반	· 자치행정과
		라) 시설피해응급복구반	· 건설과
		마) 에너지공급피해시설복구반	· 지역경제과
		바) 재난수습홍보반	· 홍보협력실
		사) 재난관리자원지원반	· 안전총괄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과
		자) 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	· 보건소
		차) 자원봉사지원 및 관리반	· 주민생활지원과
	카) 사회질서유지반	· 혼산경찰서	
	타) 수색·구조구급반	· 혼산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혼산경찰서, 혼산계통교육지원청, 육군제3685부대4대대, 한국전력공사논산지사, KT논산지점, 한국전기안전공사충남남부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충남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논산지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등 필요 기능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시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삭제>

다. 비상3단계

본부장	시장		
차장	부시장		
통제관	주관부서 실·국·소장		
담당관	해당 재난업무에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실무반	인원	총 18+α+β명	
	반장	과장급 1명	
	1) 상황관리 총괄반 (17+α명)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6명)	· 재난상황관리반 6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2명 · 재난총괄부서 직원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3명)	· 재난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7명)	· 재난총괄부서 직원 2명 · 주관부서 직원 5명
		라) 행정지원팀 (1명)	· 자치행정과 직원 1명
	2) 협업기능 반(α)	가) 긴급생활 안전지원반	· 주민생활지원과
		나) 재난원장 환경정비반	· 환경과
		다) 긴급통신지원반	· 자치행정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건설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반	· 지역경제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홍보협력실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총괄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과	
자) 의료 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주민생활지원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논산경찰서		
타) 수색·구조·구급반	· 논산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논산경찰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육군제3585부대 4대대, 한국전력공사논산지사, KT논산지점, 한국전기안전공사충남남부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충남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논산지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중 필요 기능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시·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별표 5]

사회재난 발생시의 시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2호 관련)

1. 편성기준

본부장	시장		
차장	부시장		
통제관	주관부서 실·국·소장		
담당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실무반	인원	총 10+α+β+γ명	
	반장	과장급 1명	
	1) 재난상황 총괄반 (9명)	가) 상황관리총괄팀(3명)	· 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나) 수습상황과 약림(6명)	· 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4명
	2) 협업기능반 (α)	가) 긴급생활안정지원반	· 주민생활지원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과
		다) 긴급통신지원반	· 자치행정과
		라) 시설피해응급복구반	· 건설과
		마) 에너지공급피해시설 복구반	· 지역경제과
		바) 재난수습홍보반	· 홍보협력실
		사) 재난관리자원지원반	· 안전총괄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주민생활지원과
		카) 사회질서유지반	· 논산경찰서
타) 수색·구조·구급반		· 논산소방서	
재난대응협업반(β)		· 논산경찰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육군제3585부대 4대대, 한국전력공사논산지사, KT논산지점, 한국전기안전공사충남남부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충남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논산지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중 필요 기능	
현장지원반(γ)	· 해당 재난관리 실·국·소 소속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재난대응협업반·현장지원반 구성 : 재난유형별 재난 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5]

사회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가동 및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2호 관련)

1. 가동기준

-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대책본부 또는 시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편성기준

본부장	시 장			
차장	부시 장			
통제관	재난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 또는 직속기관장			
담당관	재난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실무반	인원	총 8+α+β+γ명		
	반장	안전총괄과 팀장급		
	1) 재난관리 총괄반 (7명)	가) 상황관리총괄팀 (3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2명 · 사회재난 총괄부서 1명	
		나) 수습상황과약림 (4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2명 사회재난 총괄부서 1명 행정지원부서 1명	
	2) 협업기능반 (α)	가) 긴급생활안정지원반	· 안전총괄과 · 인구청년교육과 · 복지정책과 · 100세행복과 등	
		나) 긴급통신지원반	· 디지털정보과	
		다) 시설피해응급복구반	· 투자유치과, 농촌활력과, 축수산과, 건설과, 산림공원과, 지역개발과, 도시주택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상하수도과 등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의함)	
		라)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지역경제과	
		마) 재난관리자원지원반	· 안전총괄과	
		바) 교통대책반	· 교통과	
		사)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아)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과 · 자원순환과	
		자)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주민생활지원과	
		차) 사회질서유지반	· 논산경찰서	
		카) 수색·구조·구급반	· 논산소방서	
타) 재난수습 홍보반		· 홍보협력실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등(β)		· 육군3585부대 4대대, 논산경찰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한국전력공사논산지사, KT논산지점, 한국농어촌공사논산지사, 한국도로공사논산지사, 한국수자원공사논산수도센터, 한국전기안전공사충남남부지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 책임기관 파견직원 중 필요 기능		
현장지원반(γ)	· 해당 재난관리 실·국·소 소속직원 · 해당 읍·면·동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재난대응협업반·현장지원반 구성 :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 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6]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별표 4 및 별표 5 관련)

<삭제>

구분		비상단계 기준	
1. 자연재난	가. 풍수해 (태풍·호우·대설)	1) 비상단계	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되거나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2) 비상1단계	가)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 및 태풍경보가 발표된 때에 국지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비상2단계	가)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다) 호우·대설·태풍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나.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	1) 비상단계	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자연지진·지진해일 및 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 중 규모 4.0 이상(해역은 4.5 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해일주의보 또는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2) 비상1단계	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이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라) 지진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3) 비상2단계	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발생이 통보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나) 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다) 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2. 사회재난	가. 위기대응 행동매뉴얼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시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없음

2. 비용추계결과**가. 추계의 전제**

- 해당없음

나. 추계결과

- 해당없음

3. 작성자

안전총괄과장 조 용 근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